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581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A
	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3312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2. 11.
판 결 선 고	2019. 1. 15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12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,426,000원, 가산세 29,626,070원, 농어촌특별세 7,205,200원의 부과처분, 등록세 42,426,000원, 가산세 30,020,630원, 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방교육세 13,640,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

한편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,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·설립되어 있었다. 특히 원고가 2010. 4. 23.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가 2010. 4. 28.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. 5. 25.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, 등록 요건을 생략한 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만 받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산해버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없었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(각주 포함)를 다음과 같이 고침

또한 2015. 7. 24.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. 10. 25.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고,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모두에 대하여 사전등록이 아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2

라 설정·설립 후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였다(제249조의6, 8, 10, 20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